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2017. 1

- I. 개요
- II. 일본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
 - 1. 제도 개요
 - 2. 도입 연혁과 도입 과제
 - 3. 개인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 4. 관련 규정
- III. 일본의 기업용 고향납세제도
 - 1. 제도 개요
 - 2. 기업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 3. 관련 규정
- IV. 우리나라 고향납세 관련 법률안
 - 1. 18대 국회 이주영의원 대표발의(2009. 3. 13)
 - 2. 18대 국회 홍재형의원 대표발의(2011. 7. 05)
 - 3. 20대 국회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6. 7. 13)
 - 4. 법률안 검토
- 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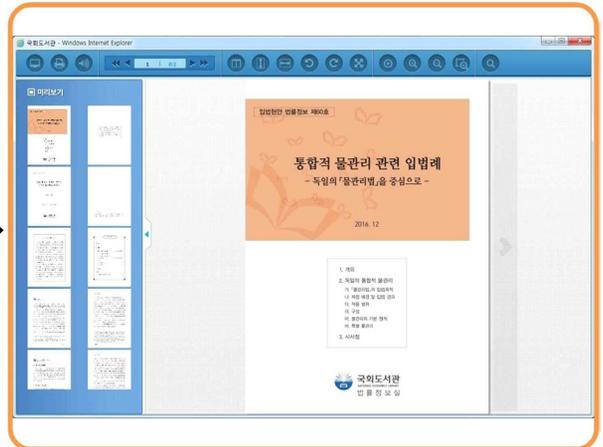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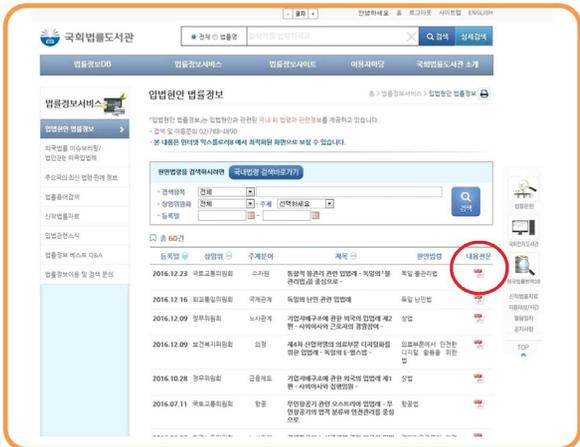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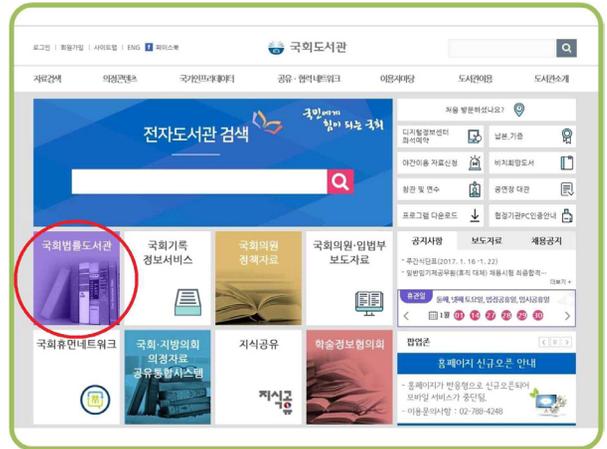
「입법현안 법률정보」 원문보기 안내

[국회전자문서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문서시스템 → 국회정보시스템 → 국회법률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국회법률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수록한 입법 참고자료입니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1호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2017. 1

작성자 : 조경희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Keywords〉

고향납세제도, 원스톱 특례제도, 지방창생사업, 소득세 공제, 주민세 공제

요 약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는 납세제도에 기부제도를 융합시킨 일본 특유의 제도로 2008년에 도입한 개인용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와 2016년에 도입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企業版ふるさと納税)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본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9. 3. 13, 홍재형의원 대표발의 2011. 7. 5), 일본의 초기실적이 저조하였고 또한 동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지가 충분치 않아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2011년 이후 실적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6. 7. 13).

본 고는 2008년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그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으나 관련 입법례의 구체적인 규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충하며, 2016년에 새로 도입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그 도입 경위와 내용 등을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과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우리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목 차

【요약】

I. 개요	1
II. 일본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	4
1. 제도 개요	4
2. 도입 연혁과 도입 과제	6
3. 개인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11
4. 관련 규정	13
III. 일본의 기업용 고향납세제도	17
1. 제도 개요	17
2. 기업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18
3. 관련 규정	20
IV. 우리나라 고향납세 관련 법률안	23
1. 18대 국회 이주영의원 대표발의(2009. 3. 13)	23
2. 18대 국회 홍재형의원 대표발의(2011. 7. 05)	24
3. 20대 국회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6. 7. 13)	25
4. 법률안 검토	26
V. 시사점	27

I. 개요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이하, 고향납세제도)는 납세제도와 기부제도가 융합한 일본 특유의 제도로, 납세자가 현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액 중 최저하한액(사무처리비용 2,000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상한까지 납세자의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고향납세제도는 일본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 이전이라는 오랜 구상을 2007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기부제도를 채용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는 세제제도이다. 2008년에 신설된 고향납세제도(개인용)와 2016년 이를 응용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회복과 세수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시작된 경기후퇴는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높은 강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2004년 삼위일체개혁이라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재원 배분의 일체개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삭감으로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가속화시켰다.¹⁾ 고향납세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초기는 경

1) 小池拓自, “地方税財政改革と税収の地域間格差(지방세 재정개혁과 세수의 지역 간 격차)”, 日本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593號, 2007.
<www.ndl.go.jp/jp/diet/publication/issue/0593.pdf> (검색일: 2017.1.19)

기후퇴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정책(아베노믹스)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답례품 제공이라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일본의 독특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초기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고향납세제도가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실적을 올리게 되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고는 2008년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와 2016년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경위 및 관련 규정 등을 소개하며 또한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간략히 정리한다.

〈표 1〉 고향납세제도 관련 제·개정 현황

구 분	내 용	관련 법률
2008년	<input type="checkbox"/> 고향납세제도의 신설 · 「지방세법」 제37조의2, 제314조의7 · 「소득세법」 제78조 · 기부금 최저하한액을 5,000엔으로, 특례 공제액 한도액을 개인주민세소득할액 1 할로 정함	지방세법등 일부개정법률(2008년 법률 제21호)
2011년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최저하한액을 감액 · 「지방세법」 제37조의2, 제314조의7 · 최저하한액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감액	현행의 힘든 경제상황과 고용정세 대응 세제정비를 위한 지방세법등 일부개정법률(2011년 법률 제83호)

구 분	내 용	관련 법률
2015년	<input type="checkbox"/> 원스톱 특례제도의 신설 ·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원스톱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정기급여자의 확정신고서 제출절차를 생략	지방세법등 일부개정법률 (2015년 법률 제2호)
2015년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한도액을 2배 인상 · 「지방세법」 제37조의2, 제314조의7 · 특례 공제액 한도액을 개인주민세 소득할액의 1할에서 2할로 인상	
2016년	<input type="checkbox"/>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의 신설 · 「지방세법」 부칙 제8조의2의2, 제9조의2의2 · 법인세액 특별 공제제도의 신설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 기부의 세액 공제 실시	지방세법등 일부개정법률 (2016년 법률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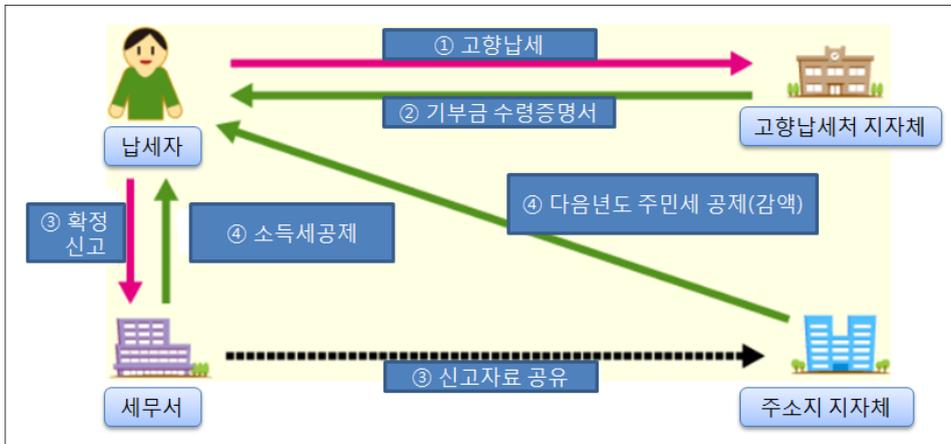
출처) 총무성 ‘지방세제 개정법률’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ichiran04.html> (검색일: 2017.1.19)

II. 일본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

1. 제도 개요

고향납세제도는 기부금 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 특유의 세원 이전제도로, 개인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일부를 기부방식으로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보통의 기부라면 기부금의 일부가 소득공제되나, 고향납세제도에서는 최저한액(사무처리비용 2,000엔)을 제외하고 기부금(고향납세) 전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받는다. [그림 1]

[그림 1] 고향납세제도의 개요



출처) 스가미하라시 고향납세제도 설명자료. <http://www.city.sagamihara.kanagawa.jp/zeikin/jyuminzei_kojin/010636.html> (검색일: 2017.1.19)

고향납세자(기부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고향납세 종합홈

페이지 또는 상업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부금납부처로 지정한다. 그리고 기부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함께 확정신고용 기부금 수령증명서를 송부한다.

다음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의 개인용 고향납세 실적이다. <표 2>

<표 2> 2008년~2015년 고향납세제도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단위: 백만엔)	8,139	7,697	10,217	12,217
건수	53,671	56,332	79,926	100,861
금액/건수 (단위: 엔)	151,646	136,636	127,830	121,127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단위: 백만엔)	10,410	14,563	38,852	165,291
건수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금액/건수 (단위: 엔)	85,085	34,099	20,310	22,767

출처) 총무성 ‘고향납세 현황조사 결과 20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topics/20160614.html> (검색일: 2017.1.19)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미국 투자회사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한 리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와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 실적이 주춤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5만3천건이었던 건수는 2011년 10만건을 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4배씩 증가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2008년 80억엔(약 800억원)에서 2015년 1,653억엔(약 1조6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초기의 1건당 금액은 15만엔(약 150만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건당 2만엔(약 2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1건당 초기실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소수 참여의 비자발적 성격의 모금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일반 국민들이 참가하는 제도로 바뀌어 1건당 액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도입 연혁과 도입 과제

가. 도입 연혁

고향납세제도의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와 관련된다. 1990년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침체는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재정 격차를 발생시켰다.

2006년 10월 비수도권인 후쿠이현의 지사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는 이런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고향기부금공제제도를 제안한다. 니시카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들을 키운 뒤 그 행정비용을 세금으로 다시 회수하기도 전에 자녀들이 대도시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고향기부금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그 기부금 상당액을 납세자의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이러한 구상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자 일본총무성은 2007년 총무성 내에 법제화연구회(고향납세연구회)를 설치하여 고향납세제도를 구체화한다.³⁾

나. 도입 과제

고향납세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세제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고향납세연구회에서는 다음의 쟁점사항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다.⁴⁾

① 고향납세의 이전 대상 지자체를 납세자의 고향인 지자체에 한정할 것인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 고향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납세자(기부자)마다 기부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향납세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되 고향의 의미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향납세처의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市區町村)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한하지

2) 西川一誠, “「故郷寄付金控除」導入を(고향기부금공제 도입)”, 日本經濟新聞 2006.10.20.

3) 総務省, “ふるさと納税研究会(고향납세연구회)”, 2007.

<http://www.soumu.go.jp/main_sosiki/kenkyu/furusato_tax/> (검색일: 2017.1.19)

4) 総務省, “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고향납세연구회 보고서)”, ふるさと納税研究会, 2007.

<http://www.soumu.go.jp/main_sosiki/kenkyu/furusato_tax/pdf/houkokusyo.pdf>

(검색일: 2017.1.19)

않고 도도부현도 고향납세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향납세가 세금인지 또는 기부인지의 여부

-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세제의 원칙인 수익부담의 원칙(수익을 받는 납세자 거주지의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과 충돌하나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의 형식을 빌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액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한다.

③ 고향납세자 기부금의 주민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인지 또는 세액 공제인지의 여부

- 소득공제방식에 비해 세액공제방식의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므로 주민세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한다.

④ 공제대상을 도부현민세로만 하고 시정촌민세를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를 분리할 실익이 적으며 실무상 두 세금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도 간소화에 유리하다.

⑤ 고향납세제도의 절차 복잡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 현행(2007년) 기부금 공제제도에서는 기부자의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추후 확정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급여소득자의 확정신고 절차가 생략됨).

⑥ 지방자치단체의 고향납세 사용처를 법정화할 필요성 여부

- 고향납세에 대해서만 그 사용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일임한다.

⑦ 고향납세와 지방교부세의 관계

- 고향납세와 지방교부세는 취지가 다른 별개의 세제로 고향납세의 기부금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시키지 않는다.

⑧ 세액공제 비율(전액 또는 80% 이상)의 설정

- 고향납세제도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원 이전문제이며 납세자의 기부행위가 목적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고향납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⑨ 고향납세 공제상한액의 설정 여부

- 개인주민세는 지역사회에 대한 회비(부담)이며 또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함으로 고향납세의 공제상한액을 주민세소득할액의 10%로 제한한다(2015년 20%로 인상).

⑩ 기부금 하한액의 설정

- 현행(2007년) 개인주민세의 기부금 최저하한액은 10만엔이나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기부금의 최저하한액처럼 5,000엔으로 한다(2011년 2,000엔으로 감액).

⑪ 고향납세와 국세(소득세)의 관계

- 고향납세제도가 목표로 하는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문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므로 세원 이전에 있어서 국세(소득세)도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참고) 일본의 지방세제 구조

일본의 지방세제는 주요 세목으로 도도부현에 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 소비세가 있고 시정촌에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가 있다.

특징으로는 주민세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그리고 사업세가 중심세 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세수는 균등할(정액과세)과 소득할이 있으며, 주민세소득할이 과세소득금액 1할의 비례세율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민세소득할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국세(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금액). 전년도 소득금액에서 개인주민세의 기본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소득할 과세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도부현 4%, 시정촌 6%)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다. 그리고 다시 특별세액공제하면 주민세소득할을 얻을 수 있다.⁵⁾ <표 3>

<표 3> 일본 지방주민세의 종류와 내용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균등할(연액)	소득할(표준세율)	균등할(연액)	소득할(표준세율)
1,000엔	4%	3,000엔	6%

고향납세제도는 제도설계에 있어서 기부금 세제방식을 적용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세의 기부금공제와 달리 지방세제의 수익과 부담의 원칙과 기부금 공제가 충돌하였기 때문에 지방세제에 있어서 기부금공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기부금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수익부담원칙을 완화하여 1990년 도도부현 공동모금회 한정기부금의 설치, 1992년 일본적십자사 지부에 대한 기부금 설치, 그리고 1994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도가 인정되었다. 다만, 지방세제의 제도적 취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세(기부금 공제 최저하한액 5,000엔, 총소득의 40퍼센트 한도)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는 최저하한액을 10만엔, 총소득 25퍼센트로 제한하여 왔다.

5) 카와세 미즈요시, “일본의 개인주민세 공제제도 현황”,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3. 개인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고향납세(기부금)제도에서는 2,000엔을 제외하고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 기본 주민세 그리고 특례 주민세에서 공제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세와 기본 주민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특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구조이다. 다만, 특례 주민세 공제액 상한은 주민세소득할의 20퍼센트까지이다. <표 4>

〈표 4〉 고향납세제도의 공제 내역

구 성	공제액	공제 여부
최저하한액	2,000엔	공제 외
① 소득세 공제액	(기부금-2,000엔)*소득세율	소득공제
② 주민세 공제액 (기본 공제)	(기부금-2,000엔)*주민세율(10%)	세액공제
③ 주민세 공제액 (특례 공제)	(기부금-2,000엔)*(100%-10%-소득세율) ※ 특례 상한은 주민세소득할의 20%	소득세액공제

① 소득세의 경우 기부금 공제의 계산식은 (기부금액-2,000엔)*소득세율(5~45%)로 이 경우 소득세율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소득세율과 공제액

과세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엔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엔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5,000엔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에 초과	45%	4,796,000엔

② 기본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 계산식은 (기부금액-2,000엔)*10%이다.

③ 특례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 계산식은 (기부금액-2,000엔)*(100%-10%-소득세율)이다. 이 경우 특례부분의 상한은 주민세소득할의 20%까지(과세소득의 2%)이다.

소득이 700만엔인 경우 고향납세자가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고향납세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주민세소득할 20%=(기부금액-2,000엔)*(100%-10%-소득세율)
- 기부금액=주민세소득할의 20%÷(100%-10%-소득세율)+2,000엔
- 기부금액=(700만엔*2%)÷(100%-10%-23%)+2,000엔=약 21만엔

즉, 소득이 700만엔인 경우 기타 다른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 상한액은 약 21만엔(① 소득세 공제액은 2만1천엔, ②와 ③의 주민세 공제액은 19만엔)이다.

만일 소득이 700만엔인 고향납세자가 21만엔 이상을 기부하면 21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③ 특례 주민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① 소득세 공제와 ② 기본 주민세 공제만을 받는다.

위의 산식은 공제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본총무성은 실제 모든 공제금액을 포함시킨 공제 상한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⁶⁾ 예를 들어, 700만엔의 급여수입을 가진 독신의 경우 기부금액 공제상한액은 약 108,000엔이다.

6) 総務省, “税金の控除について(세금 공제에 대해)”, ふるさと納税ポータルサイト.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mechanism/deduction.html> (검색일: 2017.1.19)

4. 관련 규정

가. 지방세법

고향납세제도의 주민세 공제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세법」 제37조의 2와 제314조의7이다. 법 제37조의2는 도부현(우리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하고 있고, 법 제314조의7은 시정촌(우리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한다. 다만, 두 규정은 적용 지자체만 다르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제37조의2의 내용에 대해서만 원문과 번역문을 실는다.

[지방세법 원문 및 번역문]

원 문	번 역 문
<p>(寄附金税額控除) 第三十七条之二 道府県は、所得割の納税義務者が、前年中に次に掲げる寄附金を支出し、当該寄附金の額の合計額（当該合計額が前年の総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及び山林所得金額の合計額の百分の三十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百分の三十に相当する金額）が二千円を超える場合には、その超える金額の百分の四に相当する金額(当該納税義務者が前年中に第一号に掲げる寄附金を支出</p>	<p>제37조의2(기부금 세액공제) ① 도부현은 소득할 납세의무자가 전년 중에 아래에 열거된 기부금을 지출하고 해당 기부금액의 합계액(해당 합계액이 전년의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2,0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납세의무자가 전년 중에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을 지출하고, 해당 기부금액의 합계액이 2,000엔을 초과하</p>

원 문	번 역 문
<p>し、当該寄附金の額の合計額が二千円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百分の四に相当する金額に特例控除額を加算した金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控除額」という。)をその者の第三十五条及び前条の規定を適用した場合の所得割の額から控除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控除額が当該所得割の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控除額は、当該所得割の額に相当する金額とする。</p> <p>一 都道府県、市町村又は特別区に対する寄附金(当該納税義務者がその寄附によつて設けられた設備を専属的に利用することその他特別の利益が当該納税義務者に及ぶ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p> <p>(이하 생략)</p> <p>2 前項の特例控除額は、同項の所得割の納税義務者が前年中に支出した同項第一号に掲げる寄附金の額の合計額のうち二千円を超える金額に、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の五分の二に相当する金額(当該金額が当該納税義務者の第三十五条及び前条の規定を適用した場合の所得割の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金額)とする。</p> <p>(이하 생략)</p>	<p>는 경우에는 해당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에 특례공제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공제액”이라 한다.)을 그 자의 제35조(소득할의 세율) 및 제37조(조정공제)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의 소득할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제액이 해당 소득할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공제액은 해당 소득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해당 납세의무자가 그 기부에 의해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이익을 해당 납세의무자가 취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이하 생략)</p> <p>② 전항의 특례공제액은 동항의 소득할 납세의무자가 전년 중 지출한 동항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액의 합계액 중 2,000엔을 초과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5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의 제35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의 소득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해당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이하 생략)</p>

나. 소득세법

고향납세제도의 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 제78조(기부금 공제)이다. 국세인 소득세에서 고향납세(기부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원문 및 번역문]

원 문	역 문
<p>(寄附金控除)</p> <p>第七十八条 居住者が、各年において、特定寄附金を支出した場合において、第一号に掲げる金額が第二号に掲げ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超える金額を、その者のその年分の総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又は山林所得金額から控除する。</p> <p>一 その年中に支出した特定寄附金の額の合計額(当該合計額がその者のその年分の総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及び山林所得金額の合計額の百分の四十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百分の四十に相当する金額)</p> <p>二 二千元</p> <p>2 前項に規定する特定寄附金とは、次に掲げる寄附金(学校の入学に關してするものを除く。)をいう。</p> <p>一 国又は地方公共団体(港湾法(昭和二十五年法</p>	<p>제78조(기부금 공제) ① 거주자가 매년 특정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제1호에서 열거한 금액이 제2호에서 열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사람의 그 년도분의 총소득금액, 퇴직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그 연도 중 지출한 특정 기부금액의 합계액(해당 합계액이 그 사람의 그 연도분의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p> <p>2. 2천엔</p> <p>② 전항에서 규정한 특정 기부금이란 다음에서 열거한 기부금(학교 입학에 관해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항만법(1950년 법률</p>

원 문	역 문
<p>律第二百十八号)の規定による港務局を含む。)に対する寄附金(その寄附をした者がその寄附によつて設けられた設備を専属的に利用することその他特別の利益がその寄附をした者に及ぶ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 (이하 생략)</p>	<p>제218호)의 규정에 의한 항무국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부금(그 기부한 사람이 그 기부에 의해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기타 특별한 이익이 그 기부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p>

Ⅲ. 일본의 기업용 고향납세제도

1. 제도 개요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는 지역발전정책인 지방창생정책(地方創生政策)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방창생사업에 대한 법인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의 과세방식을 참고하여 2016년에 신설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지방창생지원세제라고 한다.

지방창생정책은 아베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체인구의 감소와 수도권(동경)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을 시정하면서 동시에 지방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취업기회의 창출(지역, 인재, 일자리 창생)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이다. 관련 입법례로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 인재, 일자리 창생법」과 「지역재생법」이 있다. 「지역, 인재, 일자리 창생법」은 지방이 수립한 지방창생전략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방식은 정보지원, 재정지원 그리고 인적지원이 있으며, 그 중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창생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부를 늘리기 위한 제도가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이다.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는 본래 순수한 기부제도가 아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원이전

문제를 납세자의 의지에 의해 해결한 제도이다. 따라서 고향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고향납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창생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로 기부금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다.

한편,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였던 문제는 기부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유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⁷⁾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지방활성화라는 제도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신 기업용 고향납세를 대가로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방창생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2. 기업용 고향납세 공제 내역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창생사업에 대해 기부하면 일반기부금 공제와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공제로 전액 손실금 산입되어 약 30퍼센트의 세금경감을 받는다(법인세법 제37조).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는 이에 추가하여 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법인주민세에서 기부액의 20퍼센트

7) 衆議院, “第190回国会·地方創生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7号(제190회 국회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7호)”, 2016.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28719020160323007.htm> (검색일: 2017.1.19)

(상한: 법인세할 금액의 20퍼센트)와 지출한 사업년도 법인사업세에서 기부액의 10퍼센트(상한: 사업세액의 20퍼센트)를 세액공제한다. 만일 법인주민세의 세액 상한에 도달하여 기부액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부분을 기부액 10퍼센트(상한: 법인세액의 5퍼센트)를 상한으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지역재생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부칙 제8의2의2, 제9의2의2,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12의2). 즉, 일반 법인기부에 의한 30퍼센트의 소득공제와 기업용 고향납부제도에 의한 30퍼센트의 세액공제로 총 60퍼센트가 경감될 수 있다. <표 6>

<표 6> 법인 기부금 조세부과 구조

법인기부금 손금 산입 (국세+지방세 약 30%)	기업용 고향납세 세액공제(30%)		기업 부담 (약 40%)
	법인사업세 (10%)	법인주민세 (부족분 법인세 20%)	

다만, 기부금의 최저하한액은 10만엔이며,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재정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도쿄 등 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제외하고 있다.⁸⁾

8)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 “地方創生応援税制－企業版ふるさと納税(지방창생 지원세제－기업용 고향납세)”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iikisaisei/kigyous_furusato.html> (검색일: 2017.1.19)

3. 관련 규정

정부가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창생사업에 대해 법인이 기부하면 해당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의2(인정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과 관련된 기부를 한 경우 법인세액 특별공제)와 「지방세법」 부칙 제8조의2의2(법인의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특정 기부금 세액공제) 및 제9의2의2(법인사업세의 특정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의2의 원문과 번역문이다.

[조세특별조치법 원문 및 번역문]

원 문	번 역 문
<p>第四十二条の十二の二（認定地方公共団体の寄附活用事業に関連する寄附をした場合の法人税額の特別控除）青色申告書を提出する法人が、地域再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八年法律第一号）の施行の日から平成三十二年三月三十一日までの間に、地域再生法第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認定地方公共団体（以下この項において「認定地方公共団体」という。）に対して当該認定地方公共団体が行ったまち・ひと・しごと創生寄附活用事業（当該認定地方公共団体の作成した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認定地域再生計画に記載されている同法</p>	<p>제42조의12의2(인정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과 관련된 기부를 한 경우 법인세액의 특별공제) ① 녹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지역재생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지역재생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지방자치단체(이하 이항에서 ‘인정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에 대해 해당 인정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한 지역·인재·일자리 창생기부 활용사업(해당 인정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동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동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인재·일거리 창생기부활용사업을 말</p>

원 문	번 역 문
<p>第五条第四項第二号に規定するまち・ひと・しごと創生寄附活用事業をいう。)に関連する寄附金(その寄附をした者がその寄附によつて設けられた設備を専属的に利用することその他特別の利益がその寄附をした者に及ぶ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特定寄附金」という。)を支出した場合には、その支出した日を含む事業年度(解散(合併による解散を除く。))の日を含む事業年度及び清算中の各事業年度を除く。)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第四十二条の四第六項第二号に規定する調整前法人税額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から、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支出した特定寄附金の額(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合計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金額から当該特定寄附金の支出について地方税法の規定により道府県民税及び市町村民税(都民税を含む。)の額から控除される金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控除した金額(当該金額が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支出した特定寄附金の額の合計額の百分の十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百分の十に相当する金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税額控除限度額」という。)を控除する。この場合にお</p>	<p>한다)과 관련된 기부금(기부한 자가 그 기부로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그 기부한 자가 특별한 이익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과 다음항에서 '특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의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 및 청산 중 각 사업년도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한 조정전 법인세액(제42조의4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정전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동일하다)에서 해당 사업년도에 지출한 특정 기부금액(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동일하다)의 합계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특정 기부금의 지출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도민세를 포함한다)의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해당 금액이 해당 사업년도에 지출한 특정 기부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항에서 '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 한도액이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조정전 법인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공제를 받는 금액은 해당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p>

원 문	번 역 문
<p>いて、当該税額控除限度額が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控除を受ける金額は、当該百分の五に相当する金額を限度とする。(이하 생략)</p>	<p>한다. (이하 생략)</p>

IV. 우리나라 고향납세 관련 법률안

1. 18대 국회 이주영의원 대표발의(2009. 3. 13)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방재정법안」은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며,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안」은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안」은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투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안」은 개인이 기초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 과세년도의 주민세소득할(현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향투자기부금에 대해 과세연도 주민세소득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원을 뺀 금액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에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자는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고향투자 기부금과 같은 특정 세입 및 세출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에서 현재(2009년)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저조하다. 셋째,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을 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 제76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세제의 수익과 부담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소득할주민세는 부가세이므로 고향투자기부금 공제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 18대 국회 홍재형의원 대표발의(2011. 7. 05)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방(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경우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장점으로 첫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타 거주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거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 첫째,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가 기대했던 만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 및 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하는 출생자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도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개인 의사로 재원이 움직일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 추계가 불안정해져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셋째, 타 거주자의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이들의 의견이 지역행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20대 국회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6. 7. 13)

현행 국회에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률안의 내용은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을 통해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농어촌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법률안 검토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지방세제 구조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주민세소득할이 소득액의 10퍼센트이기 때문에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에 의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배분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소득세의 10퍼센트를 국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고향납세제도가 갖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예산지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다른 세제와 구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모금’을 통해 농어촌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방세액의 이전이라는 기존의 고향납세 관련 법률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V. 시사점

일본 고향사랑 조세제도의 장점으로 인력과 재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으로의 세원 이전을 인정한 점,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이전(기부)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고장이나 사업의 특색을 광고하고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므로서 지역경제의 활력 찾기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히가시카와 초의 사진마을 주주제도 등). 그리고 아베정부는 고향사랑 조세제도를 지방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과 연계하여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제공하는 답례품의 과열경쟁과 지방세의 수익부담원칙에 대한 위배문제 및 세정업무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세제 구조가 다른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답례품 과열경쟁에 대해 답례품의 제공은 인정하나 답례품 제공에 있어서의 주의점에 관해 총무대신 통지를 발하였다.⁹⁾ 답례품의 제공이 제도적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부모집 시에 답례품 가격 표시에 주의할 것과 금품류나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에 있어서도 기부금을 유치

9) 総務省, “平成28年4月1日付総税企第37号, 返礼品(特産品)送付への対応について(2016.4.1. 総税企 제37호 답례품(특산품) 송부에 대한 대응)”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51771.pdf> (검색일: 2017.1.19)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유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용 고향납세를 대가로 하여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기부 연계사업인 지방창생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많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시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수입의 확보는 지자체의 신사업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일본 고향사랑 조세제도에 대한 입법례 검토는 우리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된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 23 카페리어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3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33 그래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35 일본 국선번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46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47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5. 11)

48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2015. 12)

【2016】

49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6. 2)

5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2016. 2)

51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2016. 3)

52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2016. 5)

53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2016. 6)

5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6. 6)

55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2016. 7)

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2016. 10)

57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2016. 12)

58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 59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 60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1호

발 행 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조경희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7년 1월 25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31-9720109-001325-14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9-001325-14

